

## 「2025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법률자문단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42명 내외

< 25년도 법률자문단 모집 규모(안) >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           |     | 합계  |
|---------|-----|------|-----|-----------|-----|-----|
|         |     | 충청권  | 강원권 | 호남권(제주포함) | 영남권 |     |
| 선정 인원 수 | 5명  | 9명   | 4명  | 10명       | 14명 | 42명 |

\* 비수도권의 경우, 접수 현황에 따라 모집 인원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권역 구분은 지원자의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기준으로 적용(변호사 등록 증명서상)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026년 4월 7일까지(현 자문단 종료일과 동일)

□ 활동내용 :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온라인 법률 자문 수행

| 구분    | 자문지원 법률 분야                               |
|-------|------------------------------------------|
| 일반 자문 | · 노동법, 투자 및 자금 조달, 기업법무 및 기타             |
| 심화 자문 | · 규제 준수 등, 계약법 관련, 지식재산권(IP) 보호, 개인정보 보호 |

\* 지원 세부 법률분야는 [참고. 법률지원 분야]에서 확인

□ 사업운영 절차

< 스타트업 법률자문 절차 >

| 자문 신청  | 요건 검토   | 자문 수입               | 자문 진행    | 자문료 지급* |
|--------|---------|---------------------|----------|---------|
| 창업기업   | 창진원     | 법률자문단               | 자문단↔창업기업 | 창진원→자문단 |
| 상담글 작성 | 신청자격 검토 | 자문검토·수입<br>(온라인 약정) | 온라인 자문   | 자문결과 확인 |

\* 창업기업-매칭 법률자문단 간 자문수행 결과 확인 후 창업진흥원에서 자문단에게 비용 지급

## 2

## 지원자격

-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자
- ☐ **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3

## 지원서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025년 4월 14일(월) ~ 4월 30일(수), 16:00까지
-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 K-Startup 누리집 접속 → 상단 메뉴 “사업공고” → 공고명 검색 → 공고 상세 페이지 하단에 “접수 바로가기” → 입력 및 첨부파일 제출

### < 유의 사항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지원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 신청·접수는 **16:00 종료** (마감시간 이후 신규 신청 및 수정 불가)
- ② 온라인 신청서 저장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 **문 의 처** : 창업진흥원 규제혁신팀(044-410-1747, 1750)

## 4

## 평가절차

- ☐ **평가절차**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선정
  - (요건검토) 변호사 등록 증명, 징계여부 등 제출된 서류로 요건 검토
  - (서류평가) 전문성, 활동 적극성 등 참여신청서 서류평가 진행
  - (최종선정) 권역별 고득점자 순으로 법률자문단 선정

## □ 평가지표

- 신청자의 법조 경력, 창업기업 관련 소송 및 자문 등 실무경험, 자문단 활동 계획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권역별 선정규모와 관계없이 최종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항목  | 지표                                      | 주요 평가요소                                                           | 비고 | 배점   |
|-----|-----------------------------------------|-------------------------------------------------------------------|----|------|
| 전문성 | 법조경력                                    | • 법조 경력                                                           | 정량 | 30점  |
|     | 실무경험                                    | •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소송 진행 건<br>•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 완료 건 | 정량 | 30점  |
| 적극성 | 자문단 활동계획                                | • 스타트업 및 법률지원사업 이해도, 활동계획 및 의지 등                                  | 정성 | 40점  |
| 합 계 |                                         |                                                                   |    | 100점 |
| 가 점 |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보유 시 가점 |                                                                   | 정량 | 3점   |

## □ 결과발표 : 2025년 5월 중순 (예정), 신청자 개별 결과 안내

- 최종 선정된 자문단 대상으로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 운영 절차, 세부기준 등 안내를 위한 대면 설명회 개최 예정

## 5

## 제출 서류

| 연번 | 제출서류명                                                                          | 양식   | 비고         |
|----|--------------------------------------------------------------------------------|------|------------|
| 1  | • 스타트업 법률지원 법률자문단 참여신청서<br>*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붙임> | 필수<br>제출   |
| 2  | • 변호사 등록 증명서(대한변호사협회 발급)<br>* 변호사 '등록증서'로 대체 불가, 반드시 ' <u>변호사 등록 증명서</u> '로 제출 | <붙임> |            |
| 3  | •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            |
| 4  | • 사업자등록증(현 소속 회사 기준)                                                           |      |            |
| 5  | • 전문분야 등록증서(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 가점<br>해당 시 |

\* 필수제출 서류(1번~3번)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필요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나 최초 신청시 서류제출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신청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전국에서 원활한 법률 전문가 활동을 위해 동일 소속 변호사가 3명 이상일 경우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동일한 소속으로 간주합니다.)
- K-Startup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청·접수 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접수하는 경우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법률자문단 위촉 이후 관련 지침\*에 따라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에서 해촉될 수 있습니다.

\* [별첨]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관리지침

## 참고

## 스타트업 법률지원 분야

| 구분 | 업무 분야         | 서비스 내용                                                      |
|----|---------------|-------------------------------------------------------------|
| 심화 | 계약법 관련        |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고용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다양한 계약에 대한 검토 및 작성            |
|    | 지식재산권 (IP) 보호 | 상표,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영업비밀 보호 등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    |
|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한 법률자문                |
|    | 규제 준수 등       | 법규제 준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법규제 문제 및 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마련 등              |
| 일반 | 노동법           | 고용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노동 갈등이나 노동 관련 소송에 대비하여 노동법 분야의 지원           |
|    | 투자 및 자금 조달    | 투자자와의 협상, 자금 조달을 위한 계약 작성 및 투자 라운드 진행에 대한 법률적 지원            |
|    | 기업법무 및 기타     | 창업기업의 기본적인 법률 사항 지원하며, 그 외 지원기업이 기업경영 및 고객관리 등에 필요한 법률 검토사항 |

\* 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관리지침 제14조(지원범위)